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2-부탄온 (2-Butanone)
Section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	2-부탄온 (2-Butanone; Methyl ethyl ketone) ; MEK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본 제품은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산업용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공급자 정보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6번길 117(모곡동)
긴급전화번호 : 031-668-0700/3	담당부서 : 안전환경팀
인터넷 주소 : http://www.samchun.com	

Section 2 – 유해성 · 위험성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3-호흡기계 자극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3-마취 작용
	특정 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구분1

나.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 험

◦유해위험 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70 신체 중 (중추신경계, 신장)에 손상을 일으킴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예방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십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십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십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십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십시오.
 P260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십시오.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 대응**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십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Section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에 따라 적절한 소화제)을 (를) 사용하십시오.
 P321 (Section 4. 응급조치 요령에 따라) 처치를 하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08+P311 노출 또는 노출이 우려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 저장**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NFPA 지수(0~4단계) : 보건=1, 화재=3, 반응성=0
 물질의 흐름 또는 혼합에 의하여 정전기가 발생할 수 도 있음.

Section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2-부탄온 (2-Butanone)	Methyl ethyl ketone	78-93-3	100

Section 4 – 응급조치 요령

- 가.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나.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벗고 15분 이상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
- 다.흡입했을 때** 노출로부터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정지 및 곤란 시 인공호흡 실시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라.먹었을 때**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마.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섭취시 위세척 및 활성탄 슬러리의 투여를 고려할 것.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Section 5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분말소화제, 포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부적절한 소화제:자료없음
-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열분해 생성물은 탄소산화물을 발생함.
- 다.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등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화재진압을 하고 불가능시 즉각 철수 할 것.
 진화가 된 후이라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관계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Section 6 –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 흡입과 피부 접촉을 피하고 밀폐장소인 경우 공기호흡기 착용 및 환기시키고 발화원을 제거할 것.
-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 오염을 피하도록 적절한 차단 수단을 사용할 것.
 모래, 흙 혹은 기타 적절한 방벽을 쌓아서, 하수구, 도랑 혹은 강으로 번지거나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 다.정화 또는 제거방법** 유출물질은 모래,점토,기타 흡착물질로 흡수시킬 것.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눈에 자극적이며 각막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자료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음성
◦생식독성	흰쥐에서 흡입 노출에 의해 태아의 골지연·변이가 보였지만 기형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 졸음,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사람에서 손 및 팔의 감각 마비가 나타남. 중추신경 장애가 나타남.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Section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생태독성	어류: LC50 3220 mg/l 96 hr Pimephales promelas 갑각류: EC50 5091 mg/l 48 hr Daphnia magna 조류: EC50 > 500 mg/l 96 hr Skeletonema costatum
나.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log Kow 0.29
다.생물 농축성	생분해성: 89 (%) 20 day
라.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기타 유해영향	자료없음

Section 13 – 폐기시 주의사항

가.폐기방법	적용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나.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하여 폐기할 것.

Section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유엔번호	1193
나.유엔적정 선적명	Ethyl methyl keone
다.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라.용기등급	II
마.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비해당
바.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F-E 유출시 비상조치:S-D

Section 15 – 법적 규제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물질(측정주기: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특수건강대상물질(진단주기:12개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1석유류(비수용성액체)200L
라.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마.기타 국내 및 외국법	EU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 R11 Xi; R36 R66 R67 EU분류정보(위험문구): R11,R36, R66,R67 EU분류정보(안전문구): S2, S9, S16

Section 16 – 그 밖의 참고사항

가.자료의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정보, 한국소
----------	--

방산업기술원 화학물질정보,

나.최초작성일자
다.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라.기타

2002. 7. 30

10 / 2019.06.13

* 이 MSDS는 작성시 당사의 전문지식, 최신정보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공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결과는 인용된 참고자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주어진 정보는 안전한 취급,사용,공정, 저장,운송,폐기 등에 관한 안내 자료일 뿐이며 제품의 질적 특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음.